

2023년도 제25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10. 18.(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노정동(분과위원장), 김경숙, 김춘식, 정경오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25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모바일 앱 불법성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440건(안전번호 제2023-197165호~제2023-199183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3-197165호~197167호(순번 1번~3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최신 대체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등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197168호~197172호(순번 4번~8번)는 카페 및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중인 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3,426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모바일 앱 불법성 심의

- 주요내용: 저작권을 침해하는 '구글 플레이' 게시 '앱'에 대해 '구글'

내 삭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3-5호~10호)

- 회의결과: 심의 대상 앱은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 게시물을 대량으로 게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합법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별지의 심의의결(안)과 같이 심의 대상 앱의 '구글 플레이' 내 삭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노정동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5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25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노정동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김경숙 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김민영 주임: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은 전부 공개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6쪽 내지 19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전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민영 주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 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노정동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영 주임: 금일 심의안건은 30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3,440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블로그에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이며, 총 5건임.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순번 1번~3번은 웹툰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의 최신 대체 URL을 제공하는 알림 사이트의 주소를 각 제공하고 있음. 순번 1번의 경우 ①심의대상 게시물의 직접링크를 클릭하면 ②최신 대체 URL을 제공하는 게시물로 연결되고, 해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1~2단계를 거쳐 ③웹툰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로 연

결되어 웹툰 불법복제물을 감상할 수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김민영 주임: 심의대상 게시물 자체가 불법복제물을 직접 전송 중인 것은 아니나, 웹툰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최신의 대체 URL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사이트의 링크를 게시하고 있는바,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 판단됨.

또한,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제공하는 링크로 연결되는 사이트는 대부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접속차단의 시정요구가 이루어진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대체 사이트이고,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회피할 수 있는 대체사이트의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있거나 향후 갱신될 것이 예상되므로, 특정 시점의 URL에 대한 차단 조치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성을 유지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외사이트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으로 판단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됨.

한편, 각 불법복제물 제공 사이트는 보호원 시정권고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서버에 소재하고 있어 시정조치를 권고하더라도 OSP의 이행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음. 이에, 링크게시물의 경우 불

법복제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되도록 원천게시물에 직접 시정권고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 이행이 가능한 온라인서비스에 소재중인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함으로써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차단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정리하면,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외사이트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 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됨.

- A 위원: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므로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B, C, D 위원: 이견 없음.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3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김민영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번~8 번은 실명 2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카페 및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물, 만화저작물 등을 각 제공 중인 사안이며, 총 9개 게시물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순번 4번 내지 8번은 불법성이 명확하고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번~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김민영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9번~2019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3,426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방송, 영화, 출판, 만화, 게임, SW를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순번 9번에서 2019번은 전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복제물이 전송된 건으로, 시정권고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A, B,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9번~2019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97165호~197167호(순번 1번~3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197168호~197172호(순번 4번~8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197173호~199183호(순번 9번~2019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모바일 앱 불법성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9쪽부터 22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모바일 앱 불법성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5호~10호(순번 1번~6번)의 모바일 앱 불법성
심의를 가결함.”

4. 폐회 선언

- 노정동 분과위원장이 제25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5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10. 25.

분과위원장 노정동

위원 김경숙

위원 김춘식

위원 정경오